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331
----------	-------

발의연월일 : 2025. 12. 17.
발의자 : 박정현 · 민병덕 · 박해철
전현희 · 김주영 · 전용기
김성희 · 이강일 · 서미화
박홍배 · 최혁진 · 이광희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2항에서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공무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음.

또한, ILO 151호 협약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권 보장을 권고하고 있는 한편, 국민주권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도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 보장하는 것을 규정하였음.

이에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자금 후원 조항을 개정하되, 후원할 수 있는 기부범위를 제한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공무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유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32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30호) 및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후원금의 기부 제한) 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후원금 기부를 제한 한다.

② 국가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은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 국회의원·국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 및 당대표경선후보자등의 후원회의 후원인이 될 수 없다.

③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은 소속 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인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도 해당한다)의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후원회, 지방의회의원후원회 및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의 후원인이 될 수 없다.

제22조제1항 중 “개인(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한다)”을 “개인”으로 한다.

제45조제2항제2호 중 “제11조(후원인의)”를 “제10조의2(후원금의 기부 제한)와 제11조(후원인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제10조의2(후원금의 기부 제한)</p> <p>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후원금 기부를 제한한다.</p> <p>② 국가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은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 국회의원·국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 및 당대표경선후보자등의 후원회의 후원인이 될 수 없다.</p> <p>③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은 소속 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인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도 해당한다)의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후원회, 지방의회의원후원회 및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의 후원인이 될 수 없다.</p>
제22조(기탁금의 기탁) ①기탁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개인(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한다)은 각급	제22조(기탁금의 기탁) ①----- -----개인----- ----- -----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에 기탁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u>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u>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부한 자와 제11조제2항, 제12조(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제1항·제2항 또는 제13조(연간 모금·기부한도액에 관한 특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후원금을 받거나 모금 또는 기부를 한 자 3. ~ 6. (생략) ③ (생략)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현행과 같음) 2. <u>제10조의2(후원금의 기부 제한)</u> 와 <u>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u> ----- ----- ----- ----- ----- ----- ----- ----- ----- ----- ----- ----- ----- ----- ----- ----- 3. ~ 6.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